

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
신청인 (양도자)	① 성명		② 생년월일	
	③ 주소 (전화번호 :)			
명세	주택구분	④ 보유주택	⑤ 양도(일반)주택	⑥ 농어촌주택 등
	⑦ 소재지			
⑧ 주택의 종류				
⑨ 면적 (㎡)	토지			
	건물			
⑩ 기준 시가	토지			
	건물			
	합계			
⑪ 취득일		년 월 일		년 월 일
⑫ 계약금 납부일				
⑬ 양도일				
⑭ 농어촌주택 등의 보유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	년 월 일 ~ 년 월 일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4제10항에 따라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없 음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.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	없 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임차인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 성 방 법

- ⑧ 란: 주택의 종류란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- ⑨ 란: 면적에서 건물란은 단독주택은 연면적,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작성합니다.
- ⑨ 면적, ⑩ 기준시가란은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- ⑪ 란 : 일반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취득일을 각각 작성합니다.
- ⑭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란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합니다.

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제5항 적용 시)

- ④ 란 : 2주택 중 양도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작성합니다.
- ⑤ 란 : 양도한 주택에 대해 작성합니다.
- ⑥ 란 :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내 취득한 농어촌주택등에 대해 작성합니다.
- ⑩ 란 : ④란의 주택과 ⑤란 주택의 합계액과 취득한 농어촌주택등의 기준시가액을 각각 작성합니다.
- ⑪ 란 :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에 대해 한 칸 만 작성합니다.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⑫, ⑬, ⑭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